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575호, 제220957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4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8
2. 조문별 검토	13
가. 제명 및 총칙(제1장)	13
나.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제2장)	19
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제3장)	22
라.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제4장)	38
마. 보칙(제5장) 및 부칙(제6장)	56
※ 참고자료	59
1. 기회발전특구 개요	59
2.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60
3.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문	61
4. 부담금 등의 감면(안 제27조)에 관한 관계 부처 의견	68

I. 제안경위

【기획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1.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3.
3. 회부연월일 : 2025. 4.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3.
3. 회부연월일 : 2025. 4.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130개(57.0%)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혁신 성장 및 인구·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기회발전특구진흥재

단의 설립,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 부담금 감면의 특례 등 종합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배경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망·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¹⁾ 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8개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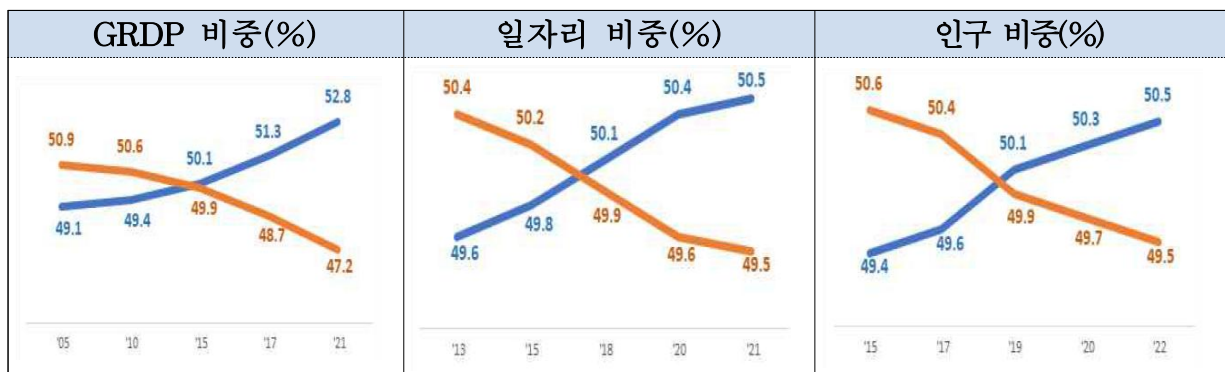
1)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

- (생산) 수도권-비수도권 GRDP 격차 확대('10년 $\Delta 1.2\%p \rightarrow$ '21년 $5.6\%p$)
- (고용)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21년 기준)
- (기업)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22년 기준)
- (인구)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22년 기준)

자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 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²⁾이며, 그 중 57개(25.0%)는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건수 또한 감소 추세³⁾⁴⁾를 보이고 있음.

[표 1] 수도권() -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제정안은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지
역이 주도적으로 설계·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그 효과에 관한
사항,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조성, 재정지원, 임시허가·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
치,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등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
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를 효율적으로 조성·육성하고, 지

2)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세 ~ 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0.5 이하인 경우 소멸위험지역, 0.2 이하인 경우 소멸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함.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의 지방투자(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
자액의 일정비율(30 ~ 50%)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기업수(개사)	89	87	81	93	89	71	72	69	62	55
국비보조금(억원)	845	1,113	1,192	1,434	1,700	2,073	2,553	1,958	2,056	2,051

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⁵⁾(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⁶⁾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항 마련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지원⁷⁾과 달리 지방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개별법이 부재하였으므로, 제정안을 통해 지방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재정지원을 규정하게 되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에 대해서 지방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기회발전특구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담금 감면 관련 관계 중앙부처 의견을 반영 필요 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임(2023. 6. 9., 제정, 2023. 7. 10. 시행).

6) 참고자료 1 참조

7) 지원 근거 법률 :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해외진출기업복귀법」)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하게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대표발의안)⁹⁾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은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조항(제23조)을 정비¹⁰⁾하려는 것으로 제정안 논의 결과에 맞추어 심사¹¹⁾할 필요가 있으며, 이하에서는 제정안 중심으로 검토함.

8) 의안번호 제2200548호, 2024. 6. 17. 발의

9) 의안번호 제2201257호, 2024. 7. 1. 발의

10)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11) 제정안에 따르는 경우 현행 「자치분권균형발전법」상의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항(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이 제정안 제9조 등과 중복되므로 이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 5장,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제3장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 제4장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제5장 보칙으로 이루어짐.

제1장 총칙에서는 특별법의 목적과 “지방” 및 “지방투자” 등 법률의 주요 용어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지방기업의 인력 양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3장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육성의 기본원칙,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효과, 기회발전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등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연구개발 지원, 임시허가·실증 등 특례지원,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기회발전특구 육성 활성화를 위

한 각종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제6장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국회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에 대한 위임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함.

[표 2] 제정안 목차

장	조 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지방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6조(지방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
제3장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	제7조(기회발전특구의 조성·육성의 기본원칙)
	제8조(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제9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1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효과)
	제11조(기회발전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제12조(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장	조 문
제4장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제13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제14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제15조(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제16조(기회발전특구 내 연구개발 지원)
	제17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제18조(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20조(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제21조(기회발전특구 성과의 평가 등)
	제22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23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4조(전학·입학 편의 제공)
	제2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26조(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제27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5장 보칙	제28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용어 정의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지방’에 비수도권 외에도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방에 대한 ‘기업 이전 및 신·증설’을 지방투자로 정의하였으며, 동 제정안에 따른 지방투자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규

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둘째,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투자금액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셋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절차 및 효과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 및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의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의 수립이나 지구의 지정 등을 의제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지정을 우선 검토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넷째, 기회발전특구 조성·육성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임시허가 및 실증 등 특례 지원,¹²⁾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공동이용 시설 사용료의 감면,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12) 정부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산업융합 촉진법」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6.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총칙(제1장)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명으로 하고 있고, 제1장에서는 이 법의 목적과 정의,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표 3]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2. “지방”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포함한다. 3. “지방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도권 중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나.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 4. “지방기업”이란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9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

제정안

다.

6.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이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의 발전과 기회발전특구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먼저, 제명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이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을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동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방투자지원 및 기회발전특구 특례 등을 규정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¹³⁾(이하 “김상훈의원안”),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¹⁴⁾(이하 “정진욱의원안”)도 우리 위원회에 심사 중이므로 함께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의안번호 제2200548호,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24. 6. 17. 발의

14) 의안번호 제2201257호,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2024. 7. 1. 발의

다음으로, 목적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전체적인 입법목적 및 지원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수도권 및 지방, 지방투자, 지방기업,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법적 개념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지방”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하면서도 수도권 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의 범위에 따라 “지방투자”, “지방기업” 및 이에 따른 지원범위도 결정되므로 지역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적절한 지역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김상훈의원안은 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을 정의하고

있고, 정진욱의원안은 비수도권지역을 “지방”으로 정의하고 있음.

다음으로, “지방투자”의 경우 수도권 중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¹⁵⁾

참고로 김상훈의원안은 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투자”를 정의하고 있고, 정진욱의원안은 인구과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 수도권 내 기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의 지방으로의 이전과 지방에의 사업장 신설·증설을 “지방투자”로 정의하고 있음.

[표 4] 지방투자 관련 규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u>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u> 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5)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통합 이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u>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u>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제9조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를 말하는데, 비수도권 지역 외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될 수 있음.

[표 5] 기회발전특구 관련 규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u>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u>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u>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u>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시행

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 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체 구성(안 제11조),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안 제15조),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안 제26조) 등 각종 지원정책의 대상을 확정하는 의미가 있음.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 특례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 제정안이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해 특별법의 지위를 갖도록 함.

다만, 동 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규제 특례 외에 특구의 조성·육성 및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적용 분야에 ‘지방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사유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투자 촉진에 유리한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제2장)

제2장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표 6]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5조(지방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소요되는 금액 중 토지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양성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지방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안 제5조)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1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¹⁶⁾와 유사한 내용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신·증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선언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이 있고,

16)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표 7] 고시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와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보육시설은 제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4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제15조제11항 각 호의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최대 100명 한도로 별표 2에 따라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고, 이때 국비 보조비율은 별표 5의 투자사업장 지역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한도는 국비(교부결정액 기준) 100억원(상생형일자리기업은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지원(안 제6조)과 관련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인력난¹⁷⁾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지방이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7) 지방중소기업 여전한 구인난, 2024. 1. 12. 조선일보

◇ 외국인 취업자 60%가 수도권 체류 중

(<https://www.chosun.com/economy/smb-venture/2024/01/12/NVTWUCYJYJDPXDYSUYS3LHZVCA/>)

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제3장)

1)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육성의 기본원칙 및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육성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러한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표 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7조(기회발전특구의 조성·육성의 기본원칙)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 혁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환경 조성 제8조(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회발전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회발전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정안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육성의 기본원칙(안 제7조)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①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②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③ 혁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법인과 개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목적이 기본원칙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업종을 ‘혁신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

사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종합발전계획 수립(안 제8조)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러한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기회발전특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을 종합·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의 의의가 있다고 보이고, 제정안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조성·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은 여러 부처의 소관 사항에 속한다는 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안 제9조)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기회발전특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의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의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고(안 제12조제1항), 지정 신청시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목적·명칭·위치·범위, 비용·효과, 개발·관리 방법, 산업의 육성 전략, 지원 계획, 규제 특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제4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안 제12조제2항), 이 때 기회발전특구는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개발경제성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안 제12조제3항).

[표 9]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9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

제정안

융합특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지방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충분한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근로자 등의 정주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6. 그 밖에 지방 혁신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명칭·위치 및 범위
 2.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계획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회발전특

제정안
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의 절차적 사항과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육성함으로써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이미 해당 법률 제23조에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지정요건(시행령 제20조제4항 → 안 제12조제3항)이나 기회발전특구계획의 내용(시행령 제20조제1항 → 안 제12조제4항)에 관하여 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동 제정안에 따라 지정대상, 지정요건 등을 특별법으로 재규정할 필요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 등 입법 형식과 관련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0] 현행법상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규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u>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u>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u> 2. <u>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u> 3. <u>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u> 4. <u>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u> 5. <u>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계획</u>

지방분권균형발전법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2.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회발전특구 개발의 경제성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6.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효과, 사업협의체 구성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의 수립이나 지구의 지정 등 의제,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 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체 구성,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지정 우선 검토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표 11]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효과) ① 제9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회발전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변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기회발전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정안

3. 지역혁신·지역균형발전·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등으로 지정·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0.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3.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효과(안 제10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①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②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③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 ④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승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변경 및 혁신지구의 지정·변경, 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⑦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⑧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8개 개별 법률에 따른 계획의 수립이나 지구의 지정 등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에 따른 효과와 내용상 유사¹⁸⁾한데, 동 규정은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경우 제정안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9조제4항에 따른 기회발전특

18)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중 제1호, 제6호,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등은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구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등(예,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기회발전특구계획의 내용만을 토대로 관계 행정기관(예, 국토교통부)과 원활한 협의가 사실상 곤란하고, 안 제10조제1항의 문구¹⁹⁾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특구 지정 시의 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계획의 수립이나 지구의 지정 등이 의제”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표 12] 유사 입법례

도심융합특구법
제11조(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①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 지역의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변경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19) “제9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회발전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심융합특구법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
 1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5.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음 기회발전특구 사업협의체 구성(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협의체는 관계 공무원, 개발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가하고 지역혁신·지역균형발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

여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 구성과 관련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3] 유사 입법례

도심융합특구법
제18조(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간의 연계·조정을 통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의 총괄 진행·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산업·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3.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 4. 도시계획·도시설계·산업·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지정 우선 검토(안 제12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구역·지구(경제자유구역, 교육국제화특구, 기능지구, 지역특화발전지구·규제자유특구,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드론시범사업구역,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자유무역지역, 문화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벤

초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등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기회발전특구가 경제자유구역, 교육국제화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기존 특구·구역·지구와 통합적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다른 지역 발전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에 특구 등의 지정을 신청·요청·제안하기 전에 개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등이 타당한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²⁰⁾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 14] 유사 입법례

도심융합특구법
제24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등으로 지정·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

20) 아울러, 드론훈별자유화구역, 드론시범사업구역 등(제6호 관련)은 공모 및 공역, 전파안전성 검토를 위해 국방부·과기부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선 검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토부 의견을 고려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고, 혁신도시(제11호 관련)의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전제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와는 조성의 목적이 다르다는 걸 감안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도심융합특구법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0.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제4장)

1)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및 집합투자기구 조성(안 제13조 및 제14조)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기회발전특구펀드, 이하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표 15]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3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①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조성하려는 자는 출자금 총액,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우선 조세특례(안 제13조)에 관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미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 이전기업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참고 1).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이미 현행법상 조세특례가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제정할 실익이 없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법의 개정을 통해 조세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²¹⁾²²⁾ 개별법에 별도로 조세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집합투자기구 조성(안 제14조)에 관련하여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35²³⁾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규정은 과세특례의 요

2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②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생략)

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등일 것

2.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② 제1항의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3억원 이하일 것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라 한다)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납입된 금액의

건 및 내용만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특례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 투자하도록 함.

제정안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게 되면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지원(안 제15조·제16조)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안 제1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자에게 제품 생산, 서비스 실시, 연구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표 16]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5조(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회발전특구 내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자의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먼저,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 재정지원(안 제15조)과 관련하여 현재 「외국인투자 촉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므로, 제정안이 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등” 보다 광범위한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7] 유사 입법례: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비용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u>기반시설의 지원</u> 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u>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u> .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

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안 제16조)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용 지원 외에도 제품·서비스의 우선구매, 자료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3)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등(안 제17조)

제정안은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회발전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표 18]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7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①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역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산업융합 촉진법」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6.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제정안
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회발전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촉진하여 수도권에 비해 발전이 뒤쳐진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산업의 거점을 육성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허가·실증 등에 관한 특례(이른바 “규제샌드박스”)를 부여받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현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규제특례 관련 개별법²⁴⁾에 따라 규제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혁신 3종세트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이러한 개별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

24) <개별 법령상 규제혁신제도, 지원기관>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혁신금융서비스 규제특례	산업융합촉진법 규제특례	스마트도시법 규제특례	정보통신융합법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	규제신속확인	규제신속확인	규제신속확인	신속처리
실증특례	-	규제특례	스마트실증사업	실증특례
임시허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임시허가	스마트혁신사업	임시허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펀테크지원센터	대한상공회의소	국립과학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으로 하고 있는데,

정진욱의원안은 제정법에 규제신속확인(안 제19조), 실증특례(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임시허가(안 제24조·제25조)에 관한 조문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보다 명확하고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정법에 개별 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표 19] 유사 입법례

도심융합특구법
제25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①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 「산업융합 촉진법」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법
③ 제2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회발전특구 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등(안 제18조~제21조)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안 제18조), 기업종합지원센터(안 제19조), 복합커뮤니티센터(안 제20조) 등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회발전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21조).

[표 20]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18조(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① 기회발전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2.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단지·교육시설·주택단지 등의 조성·관리 3. 기회발전특구 내 교육·문화·의료·정보통신·유통산업 등의 육성·지원 4.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 기회발전특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회발전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
2. 기회발전특구 내에 입주하는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3. 기회발전특구 내 과학·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기회발전특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5.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6.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① 기회발전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기회발전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안 제18조)은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단지·교육시설·주택단지의 조성·관리, 교육·문화·의료·정보통신·유통산업 등의 육성·지원, 기업·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등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법인으로, 기회

발전특구 조성 후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특구·지구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²⁵⁾과 역할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²⁶⁾

다음 기업종합지원센터(안 제19조)는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입주기업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살펴본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이 기업·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사업(안 제18조제3항제4호), 미래혁신산업의 산업화 촉진(안 제18조제3항제5호) 등 유사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두 기관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5) 예를 들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등이 있음.

26)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입지를 조성·관리하는 관리기관이 이미 존재하므로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마지막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안 제20조)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1] 유사 입법례

도심융합특구법
제26조(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재단으로 보고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단지·교육시설·주택단지 등의 조성·관리 3. 도심융합특구 내 교육·문화·의료·정보통신·유통산업 등의 육성·지원 4.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 도심융합특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심융합특구법

1.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3. 도심융합특구 내 과학·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도심융합특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5.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6.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5) 주택공급·교육과정에 관한 특례, 사용료·부담금 감면 감면 등

(안 제22조~제27조)

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별도의 주택공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특성에 맞도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제24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부담금 감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표 22]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22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기회발전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기회발전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중등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정안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④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양여, 대부,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비용·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먼저 안 제22조는 필요한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주택의 공급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 등의 정주 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음으로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²⁷⁾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중등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방으로의 이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자녀 교육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행정안전부는 안 제2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관련하여 공유재산은 유상사용이 원칙으로 무상사용 허용 시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사용허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26조(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무상 사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재정 및 형평성 고려 시

27)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안 제27조는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산림청 등은 해당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 등에 따라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는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되거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²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8)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는 부담 근거 법률인 「산지관리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에서 감면대상·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감면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체초지조성비’는 「초지법」 및 시행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감면을 규정하는 경우 법 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 **환경부**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같음에 상당한 금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각각 근거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토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면제 자체가 불가하다는 의견임.

[표 23] 유사 입법례

도심융합특구법
제30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 등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중등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비용·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도심융합특구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마. 보칙(제5장) 및 부칙(제6장)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안 제28조),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9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표 24] 제정안 조문

제정안
제28조(국회에 대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국회에 대한 보고(안 제28조)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지원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 현황이 국회에 정

기적으로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3조²⁹⁾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국회 보고 대상이고, 국회는 필요 시 정부에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마지막으로 시행일(안 부칙)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입주기업 및 관련 기관 등이 새로운 법률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6개월 이후 시행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한편, 제정안과 같이 기회발전특구를 별도로 규정하게 되면, 제정법 시행 이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법 시행 이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29)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

참고 1

기회발전특구 개요

-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 **(대상지역)**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 **(입지)**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既 조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

- **(면적)**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4.96km²(150만평), 도: 6.6km²(200만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

-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기회발전 특구계획 수립 후 산업부에 지정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

-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 **(지원내용)** 특구 내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원비율 가산),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 법인세 및 취득·재산세 감면, 양도세 과세이연 등

- **(추진경과)**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지정 근거 마련('23.7)

-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의결(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3.10)

- 총 81.2조원의 기업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1,245.9만평* 지정('24)

* 지정 가능 면적 총 2,500만평 중 50% 지정 완료(면적상한 : 광역시-150만평, 도-200만평)

지역	경북	충남	경남	울산	전남	충북	전북	대구	부산	대전	세종	강원	광주	제주
면적 (만평)	152	143.6	132.7	126.9	124.5	109.6	88.5	82.7	80.2	60.3	56.3	43	36.5	9.1

참고 2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중략)…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조세특례제한법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받을 수 있다.

1. 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등일 것
2.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② 제1항의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3억원 이하일 것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라 한다)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별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지방세특례제한법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공장을 신설·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㉕ 가업상속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항제2

지방세특례제한법

호라목 및 제1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1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 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항에서 “본사”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한 경우

나.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2.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따른 상시 근무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참고 4

부담금 등의 감면(안 제27조)에 관한 관계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산림청 (‘25.04.11.)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대체산림 조성을 위해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감면여부는 「산지관리법」에 규정 필요 - 타법에서 부담금 감면 규정시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형평성을 해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25.04.21.)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농지법」에서 감면대상·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감면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을 타 법령에서 규정함은 「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개별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더라도 「초지법」 시행령 상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오해·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환경부 (‘25.04.21.)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증설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부담금으로 부담금 감면시 사업자 재정부담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될 우려가 있고, 재원 부족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수도공급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있음 - 특구 개발사업에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시 타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 및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자연환경보전법」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갈음에 상당한 금액은 시설의 신·증설 및 대보수 등에 활용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으로, 감면·면제시 재원 부족으로 폐기물 대란 유발 - 평균 하수도요금은 원가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시 해당 비용을 국민전체가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국토교통부 (‘25.04.21.)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제 자체가 불가